

#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1
----------	----

제출년월일 : 1999. 6.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95.8.4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는 등의 사유와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평창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일반폐기물로 표기된 부분을 생활폐기물로 변경 (안제2조, 제3조, 제5조)

※ '95. 8. 4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나. 1일 300kg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 배출사업장폐기물과 300kg이하 배출하는소량 배출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으로 소량 배출사업장폐기물로 표기하여 구분하고자 함 (안제4조, 제6조)

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0조제3항)

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조항 삭제(안제11조)

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 독립채산제조항 삭제(안제14조)

## 3.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평창군조례제 호

### 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2조제3호중 "법제2조제2호"를 "법제2조제1호"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하고 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사업장쓰레기"를 "소량배출사업장 쓰레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사업장쓰레기"를 "소량배출사업장쓰레기"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장소를 임의변경하거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이행을 명하고 계속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법제13조제4항"을 "법제13조제3항"으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제17조제4항"을 "법제13조제2항"으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u> 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② . . . . . 생활폐기물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u>사업장쓰레기</u> , 공공용봉투에는 하천,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등에 대한 기관단체 및 주민의 자연정화활동, 공동청소 행사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관광지용봉투에는 관광지, 마을관리휴양지, 산지정화보호구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③(생략)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 . . . . · · · 소량배출사업장쓰레기 . . . . .
제1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생략) ②(생략) <신설>	②~③(현행과 같음)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지정을 받은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장소를 임의 변경하거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이행을 명하고 계속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 을 받은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p> <p>제12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 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 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3.(생략)</p> <p>②(생략)</p> <p>③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 기물 처리업자에 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간의 직접 계약 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기타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 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 · · · · · 생활폐기물 · · · · · · · · · · · · · · · 1.~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법 제13조제2항 · · · · · 생활폐 기물 · · · · · · · · · · · · · · · &lt;삭제&gt;</p>